

기초안전보건교육 변경사항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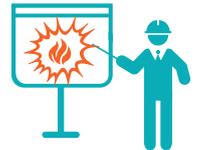


최근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 등 **건설현장의 화재·폭발사고를 예방**하고
건설업 **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여부 확인**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.

안전보건교육규정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-129호) 일부 개정('20.11.17.시행)

1 교육내용에 화재·폭발 예방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

구분	교육 내용	시간
공통	·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및 안전의식 제고	1시간
교육대상별	·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(재해사례 및 예방대책) ※ 보호구(안전대· 안전 · 안전화)착용 및 화재·폭발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·피난교육 에 관한 사항을 1시간 이상 실시	2시간
	·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	1시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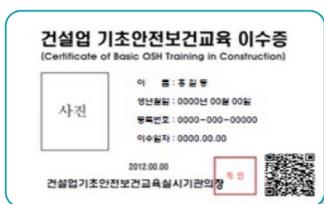


* 화재·폭발사고예방 표준교안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 안전보건자료실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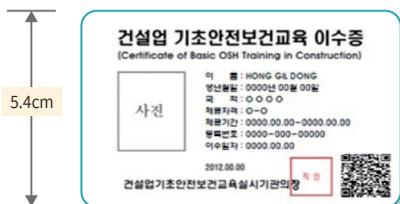
관련 규정 · 제13조의2(교육방법 및 수강생의 관리 등)

2 교육이수자 확인의 편리성을 높였습니다.

- » 이수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빙 자료를 교육기관에서 등록하도록 하여 교육이수의 투명성 제고
- » 이수증에 QR코드를 추가하여 이수여부를 확인토록 개선
- » 외국인은 국적·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함께 표기



내국인



외국인



관련 규정 · 제13조의5(건설업기초교육 이수증 발급 등)
· 별표4(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)